

춘천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20나519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이중

변 론 종 결 2021. 5. 27.

판 결 선 고 2021. 6. 24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4. 29. 선고 2019가단5574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24. 체결된 매매

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5,6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24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31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4. 3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. 4. 30.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. 4. 30.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2019. 5. 24.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아울러,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9. 4. 30.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5,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, 제1심법원은 그중 위 2019. 4. 30.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, 2019. 4. 30.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2019. 5. 24. 매매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.

그런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9. 4. 30.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5줄의 “취소되어야 되어야 한다”를 “취소되어야 한다”로 수정하고,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피고는 B의 E에 대한 채무는 2014. 3. 6.부터 존재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B의 E에 대한 채무원금은 2019. 4. 30.경에는 56,711,150원이었으나 2019. 5. 31.경에는 237,299,175원으로 약 1억 8,000만 원 상당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중선, 판사 조미연, 판사 김시원

부동산 목록

1. 원주시 S 전 152㎡
2. 원주시 T 전 500㎡ 끝.

채권 목록

B이 2018. 2. 20. F과 사이에 원주시 G 토지, H 토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제공한 1억 원 중 5천만 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. 끝.